

#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이수, 추후 진로결정, 현장적응력 제고를 통하여 현장실무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부산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안내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25%, 직무수행 75%로 구성 / 실습지원비 162만 원 이상(월) 지급  
▶ 산출근거 : (월)209시간 × 10,320원 × 0.75 = 1,617,660원 (162만 원)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40%, 직무수행 60%로 구성 / 실습지원비 119만 원 이상(4주) 지급  
▶ 산출근거 : (주)48시간 × 10,320원 × 0.60 × 4주 = 1,188,864원 (119만 원)

### 1. 운영기준 : 1개월(4주) 혹은 2개월(8주) 단위로 운영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중견·대기업 등 우리 대학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및 참여가능 기업 (단, 1인 창조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대학에서 판단)

### 3. 대상학생 및 선발기준

- 4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이상의 재학생\* (초과학기자 가능)  
\* 휴학생, 졸업유예생(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 참여 불가
- 전공 및 기타 : 각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복수전공 가능), 성적 및 관련 자격증

### 4. 학생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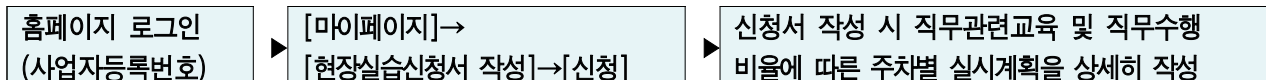
- 학점인정 : 실습기간별 실습일수 기준 최소 3학점 ~ 최대 6학점 의무 이수
- 기업부담 실습지원비 : 표준 162만 원 이상(월 기준) / 자율 119만 원 이상(4주 기준)

※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100% 이상의 실습지원비(월 2,156,880원)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환급)함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 □ 모집기간 : ~ 2026. 5. 22.(금)

1. 참여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placement.pusan.ac.kr)를 통하여 기한 내 온라인 신청
2. 선발일정 준수 : 차수별 지원학생이 누적되지 않으므로, 각 선발기간 내 반드시 선발 완료



## □ 추진일정

추진기간	내 용
~ 5. 22.(금)	<b>【기업】</b> 참여희망 실습기관 모집 및 온라인 신청서 등록
5. 23.(토) ~ 5. 26.(화)	<b>【학생】 1차</b> 현장실습 참여 지원
5. 27.(수) ~ 6. 5.(금)	<b>【기업】</b> 1차 선발(서류, 면접) 및 2차 추가모집 신청·등록 ☞ <b>선발, 탈락 여부 학생에게 즉시 고지</b>
6. 6.(토) ~ 6. 8.(월)	<b>【학생】 2차</b> 현장실습 참여 지원
6. 9.(화) ~ 6. 12.(금)	<b>【기업】</b> 2차 선발(서류, 면접) ☞ <b>선발, 탈락 여부 학생에게 즉시 고지</b>
6. 16.(화) ~ 6. 18.(목)	<b>【학교】</b> 참여확정 학생 수강신청(서류제출, 등록금납부) 및 상해보험 가입
6. 23.(화)	<b>【학교】</b> 참여확정 학생 대면 사전교육 진행
6. 25.(목) ~ 8. 31.(월)	<b>【학생, 기업】</b> 실습 진행 (기간 중 1개월(4주)-20일 또는 2개월(8주)-40일)

① 실습단위 : (표준)1개월 (자율)4주 단위 운영

② 실습일수 : (표준)1개월 (자율)4주 - **최소 20일** / (표준)2개월 (자율)8주 - **최소 40일** 이상 충족 필요

## □ 현장실습 운영원칙 및 실습기관 유의사항

1. 운영 원칙 : 교육부고시 제2022-1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  
 가. (참여학생 안전 보장) 지도교수의 1회 이상의 방문지도 실시 및 학생 상해보험 가입  
 나. (기업 선발권 보장) 실습기관 자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하여 직접 실습생 선발  
 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가입) 가입 후 증명서류를 학교로 제출 ☞ 별도 안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며, 그 외 다른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이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없음  
 - **산재보험 가입(적용)기간은 실습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취득일=실습시작일/상실일=실습종료일 익일)**

- 라. (적절한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생 직무수행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마. (직무교육 및 멘토배정) 표준/자율 직무관련교육 비율에 따른 **직무교육 보장 및 전담멘토 배정**

### 2. 실습기관 유의 사항

- 가. 운영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실습 직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습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학생 요건에 관련된 모집전공 및 계열을 작성 (**전공무관 기재 지양**)  
 ※ 실습기관의 요청으로 2개 학기 이상(예:하계학기-2학기) 동일 실습생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바람  
 나. 학생 선발 완료 후, 당초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등 내용(실습지원비) 변경 불가

## □ 문의처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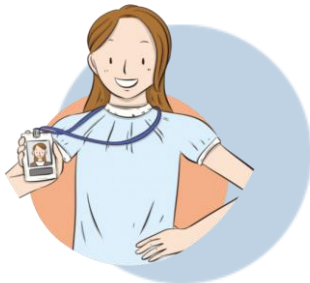
☎ 051)510-1000, 3704 / intern@pusan.ac.kr / https://placement.pusan.ac.kr

학점과 경력을 동시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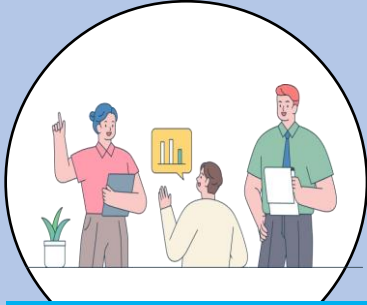
# 현장실습학기제란?

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22조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현장실습) 명시(2020.10.20.)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 현장실습 운영 표준화 기준 수립 명시(2020.12.22.)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 2	• 현장실습 지원비 산출 기준 명시(2021.6.15.)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개정(202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방법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서식, 프로세스 마련(실습운영 계획서 등)</li> <li>- 실습생에 대한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업) 의무 가입</li> <li>-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의 지급 금액 : 최저 임금의 75% 이상</li> <li>- 현장실습생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 : 최저 임금의 25% 까지</li> </ul> </li> <li>* 2022년부터 실습기업은 지원받을 국고지원비(LINC사업 등)를 포함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에 국고지원비 지급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마련</li> </ul>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규 학기 또는 방학을 활용, 학생은 전공 관련 기관(기업)의 실습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기업)에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관(기업)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우수 인재를 사전 교육하고 선점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생과 기관(기업) 모두에게 상호 유익한 산학협력 교육 모델(Co-op, Cooperative Education)

# 유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Co-op

✓ 직무수행 시간이 실습시간 전체의 **75%**  
※ 25%는 직무관련 교육(단,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 교육 10%)

✓ (월) 209시간 × 10,320 × 0.75 = 1,617,660원  
※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원칙

✓ 근무일수 : 월단위기준

✓ 실습기관에서 지원학생을 기준별 자체 선발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직무수행 시간이 실습 시간 전체의 **60%**  
※ 40%는 직무관련 교육

✓ (주) 48시간 × 10,320 × 0.60 × 4주 = 1,188,864원  
※ 최저임금의 60% 이상 지급 원칙

✓ 근무일수 : 4주단위기준

✓ 학교에서 발굴한 실습기관이 지원학생을 자체 선발



## WIL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참여 요건-기업



실습기관내  
현장실습생  
담당멘토  
배정운영!

✓ 실습생 보건위생 및 안전 보장 가능

✓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 수행

✓ 자격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실습 수행 기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중견·대기업 중 MOU 체결 및 참여가능 기업  
※ 단, 1인 창조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대학에서 판단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근무

📍 정규학기 3~4개월(12~16주)-60~80일 계절학기 1~2개월(4~8주)-20~40일

## 참여 요건-학생



학점이수가  
가능한  
3, 4학년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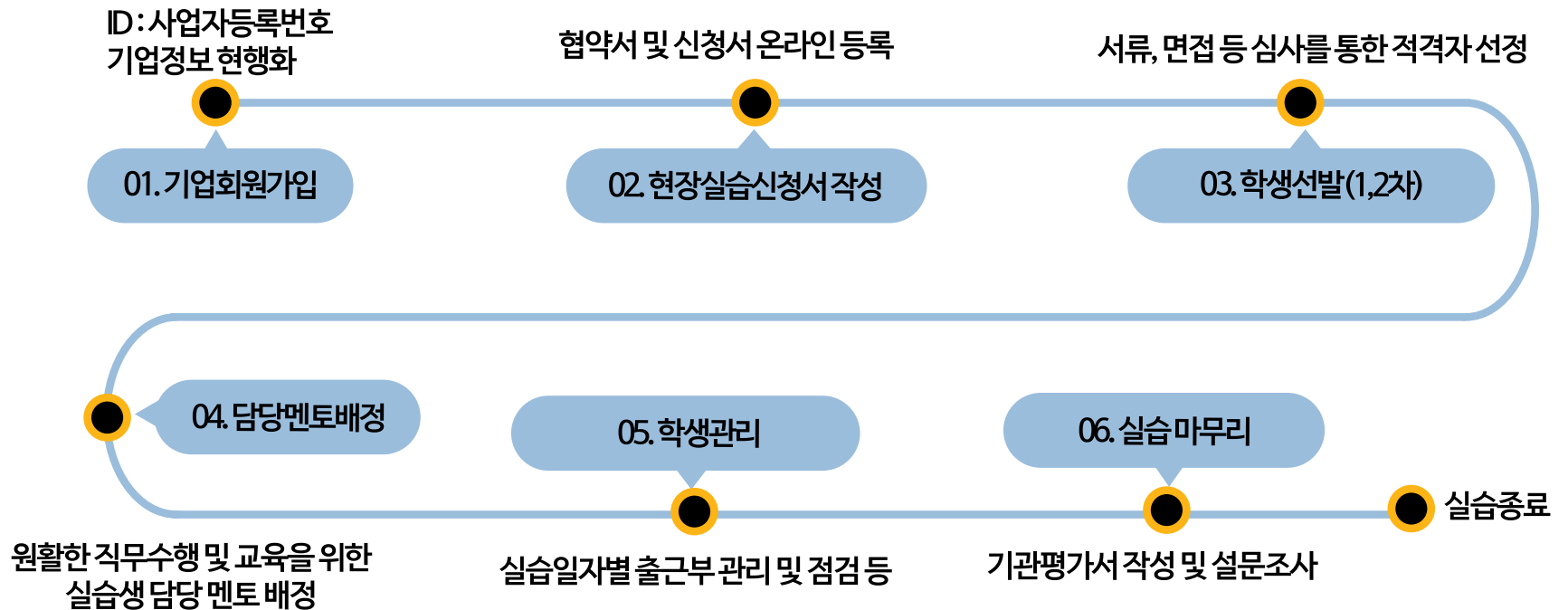
✓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 고려

✓ 초과학기(예정)자 지원 가능

✓ 학점취득이 필수이므로 휴학생, 졸업유예생 참여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직전 계절학기 참여 불가 (ex. 26.2월 졸업예정 → '25-겨울 계절학기 참여 불가)

# 실습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 01. 기업 회원 가입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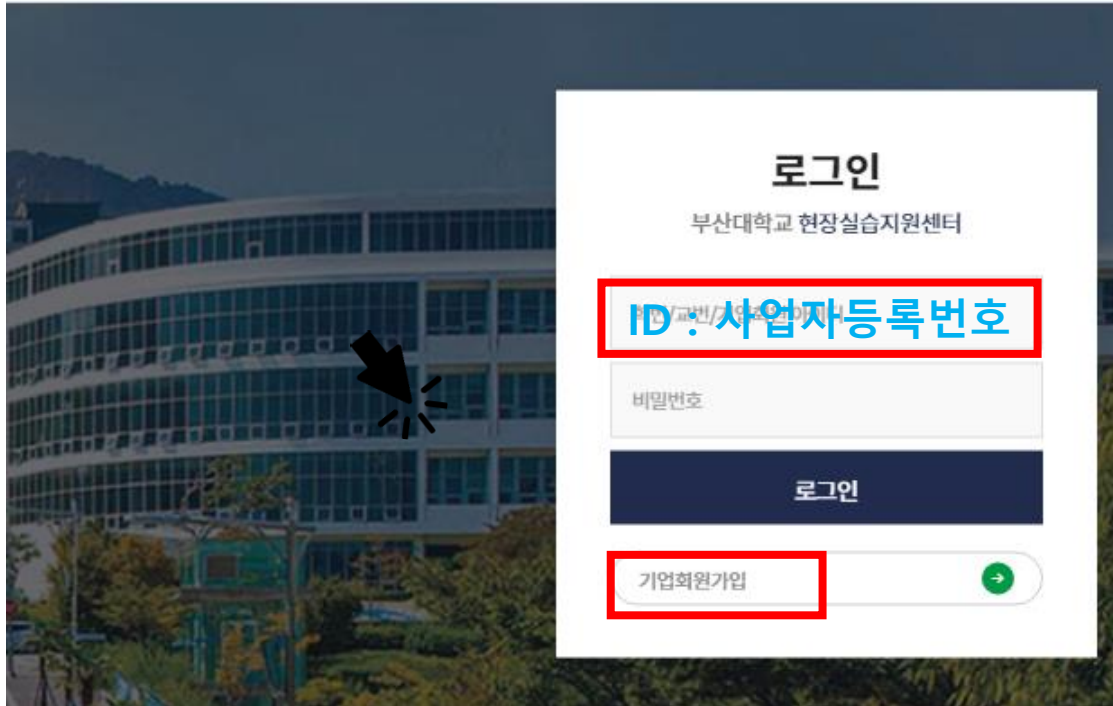
ID. 사업자등록번호



센터 승인 후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센터로 연락

### 현장실습안내



- ✓ [마이페이지-기업회원정보수정]을 통한 주기적 현행화 필수
- ✓ 담당자 변경시, 인계인수 철저
- ✓ 주요 안내사항의 메일전달에 따른 기업 메일 현행화 및 수시확인

# 온라인 매뉴얼

## 0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로그인



마이페이지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소개 • 현장실습안내 • 참여기관정보 • 커뮤니티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 현장실습 참여신청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신청

실습생 선발

실습생 관리

신청서 작성

서면점검서(승인)

최종모집마감

선택	차수	기업명	진행상태	연도	학기	실습기간	모집전공	모집인원	지원인원	선발인원
<input type="radio"/>	1		마감	2024	여름방학	2024-08-01 ~ 2024-08-31	건축실계학과1...	1명	1명	1명
<input type="radio"/>	2		마감	2024	여름방학	2024-08-01 ~ 2024-08-31	건축실계학과1...	1명	0명	0명
<input type="radio"/>	3		마감	2024	여					

- ✓ [마이페이지-현장실습참여신청]탭에서 진행
- ✓ 서면점검서 작성 후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작성 클릭 시 협약서 작성 후 운영계획서 등록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신청

실습생 선발

실습생 관리

기본정보 수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 제1조(교육과정)

학기제- 12주 또는 16주 선택  
계절제- 4주 또는 8주 선택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 실습가능한 전체일자로 자동설정되어있음.  
(실제 실습일은 협약서 작성 후 운영계획서에 기재)

####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학기별 자동설정** 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들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1일  시간 /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주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임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기준  (시간)을  인 경우  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162만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119만원 이상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홈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 현장실습 참여신청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신청

실습생 선발

실습생 관리

기본정보 수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실습요청업체현황

기관(법인)명	test 기업	영문기관명	testCompany
대표자명	홍길동	사업	
설립연도	2015-04-08	종업	
매출액(연간)	50505050원	부산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도매 및 소매업(45~47)>도매 및 상품 중개업>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사업장 소재지	부산		
홈페이지	http://www.test.com		
기관현황(구분)	중견기업	상장여부	코스닥
사업의 종류(업태)	정보통신업	사업의 종류(종목)	소프트
기관소개	123 (1).jpg 기관소개 자료가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기본정보 수정]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운영계획서 상 기업정보는 자동연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기본정보수정]에서 진행)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1일 8 시간 / 1주 40 시간
정규 근로일수	주 5일 / 근로요일 월-금

##### 현장실습 담당

부서명	010-1234-1234	성명	김가나
직위	실장	이메일	test@Test.company
연락처	010-1234-1234	휴대폰	010-1234-1234

# 온라인 매뉴얼

## 03. 학생 선발

로그인



마이페이지



학생 선발



선발 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홈 > 마이페이지(실습기관) > 실습생 선발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신청

실습생 선발

실습생 관리

기본정보 수정

년도  
선택



학기  
선택



학년  
선택



승인여부  
선택



전공  
전공을 입력하세요.

SEARCH

년도	학기	학과/전공	성명	학번	학년	평점	모집전공	실습기간	승인여부	상태
2024	여름방학		최유리		4학년	3.76	건축실계학과 1...	2024-08-01- 2024-08-31	선발	취소



선발 및 탈락여부를 지원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원활한 매칭을 요청드립니다



- ✓ 지원한 학생들의 목록 및 신청서를 확인 (학생명 클릭)하여, 해당 기간에 선발 진행
- ✓ 차수별 지원자가 누적되지 않으므로(자동 탈락) 차수별 선발기간 내에 반드시 선발 완료

# 온라인 매뉴얼

## 04. 학생 관리

산재보험확인서 업로드

마이페이지



실습생관리



실습정보보기



1

년도 선택 학기 선택 성명 성명을 입력하세요. SEARCH

년도	학기	학과/전공	성명	학번	학년	모집전공	실습기간	차수	현장실습 신청서	산재보험 확인서	실습정보
2027년도	겨울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생 1	30303030	3학년	전공테스트	2024-04-29~ 2024-05-24	1	2 신청서	3 확인서업로드	
2027년도	겨울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생2	202020202	2학년	전공테스트	2024-04-29~ 2024-05-24	1	신청서	확인서업로드	
2027년도	겨울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생 4	20271212	3학년	전공테스트	2024-04-29~ 2024-05-24	1	신청서	확인서업로드	
2027년도	여름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생 4	20271212	3학년	전공테스트	2024-04-26~ 2024-05-23	1	신청서	확인서업로드	6 실습정보
2027년도	여름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인2	20271111	3학년	전공테스트	2024-04-26~ 2024-05-23	1	신청서	확인서업로드	
2027년도	여름방학	소속1대학2 (소속1전공2)	학인3	789789789					신청서	확인서업로드	

업로드

3 + 파일선택

상단에 파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업로드 5 취소

- ✓ 최초 1회 산재보험 확인서 업로드 후
- ✓ ⑥실습정보 탭에서 학생관리 가능

# 온라인 매뉴얼

## 04. 학생 관리

출근부 체크

마이페이지



실습생관리



출근부 체크



실습정보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입니다.

성명

- ✓ 일지: 학생이 작성한 내용이 연동
- ✓ 출근부: 달력형태. 클릭시 [출근-휴일-초기화]순서로 변경  
\*실습종료일까지 출근체크 완료

실습보고서

일지

출근부

기업실문조사

실습기관평가서

이전 다음 오늘

2024년 7월

월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온라인 매뉴얼

## 04. 학생 관리

실습기관평가서

마이페이지



실습생관리



실습기관평가서



- ✓ 학생의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우수-보통-미흡에 따라 5점척도 평가
- ✓ 향후 학점부여 및 현장실습 재수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 저장 입니다.

실습보고서

일지	출근부	기업실문조사	실습기관평가서
----	-----	--------	---------

실습내용

① 상기 학생의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평가항목들에 대해 해당 평가란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 실무관련 지식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1
2. 업무 숙지능력 과 이행능력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1
3. 실습시의 태도와 성실성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1
4. 책임감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1
5. 동료애와 희생정신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1

## 04. 학생 관리

### 설문조사

마이페이지



실습생관리



설문조사

- ✓ 해당학기 실습종료전까지 참여
- ✓ 향후 현장실습학기제 제도 개선 등 기업 만족도 분석에 따라 발전적 활용

### 실습정보

종료여부  
현재 **실습중** 저장 입니다.

---

### 실습보고서

일지	출근부	<b>기업실문조사</b>	실습기관평가서
----	-----	---------------	---------

#### 설문조사

현장실습 종료 후 향후 개선 및 지속적인 산학협력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 구분

1. [실습정보] 기업 규모 및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중소 및 중견기업  창업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기타

※ [1-1] 현장실습 내용

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1-2] 현장실습 내용

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1-3] 현장실습 내용

4. 현장실습 참여한 학생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위기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1-4] 현장실습 내용



✓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3.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실습기관의 착오로 소득신고 및 과세징수가 된 경우, 실습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환급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① 기업-학생-학교 3자 협약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칭 완료 후 부득이한 **변경 발생시** 반드시 센터에 먼저 상의
- ② 반드시 협약서 및 신청서 상 기재된 실습지원비를 (표준)월 단위, (자율)4주 단위로 실습기관 명의로 실습생에게 지급 (실습생에게 지급일 사전 안내 바람, 추후 이체내역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③ 학생관리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병행하여 안내 및 진행하므로, 담당자 메일을 수시 확인해야하며, 기업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소통 활성화
- ④ 현장실습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예절 준수
- ⑤ 실습 중 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사고 발생(상해 또는 부상)시 학교(현장실습 지원센터, 510-1000)에 필히 신고 (학교 : 상해보험 가입, 기업 : 산재보험 가입)
- ⑥ 실습기관의 **보안 수칙사항을 안내하고**, 실습과 관련없는 개인정보수집을 금지하며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 협조 요청  
(실습생의 인적사항, 관련 문서, 사진 등의 유출 금지-핸드폰 사진 촬영 및 SNS 업로드 주의)

# 기타 유의 사항



✓ 안전 규칙 준수

✓ 잠재적인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정기적 스트레칭 등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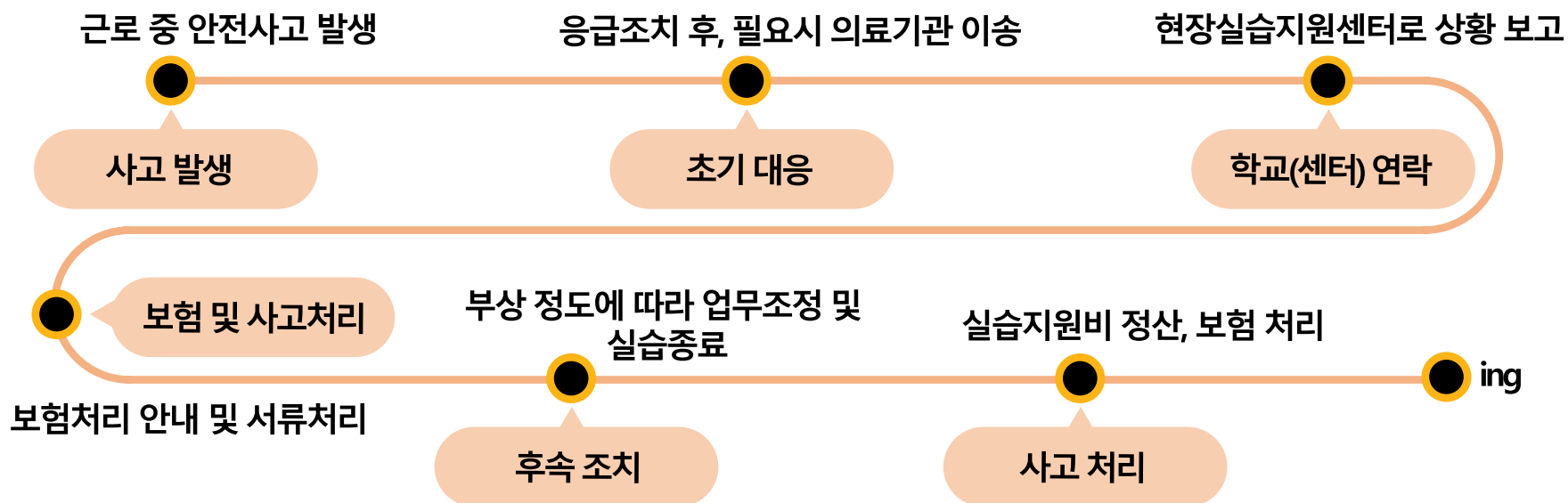
✓ 재해·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구, 소화기, 피난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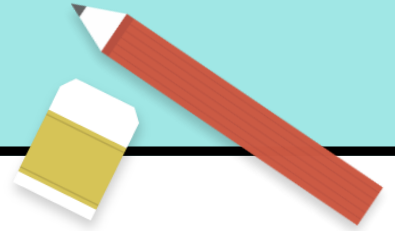
## 안전사고 처리 절차



051-510-1000



# 「주요 질의 사항」



## 외국인 학생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과정)에 등록 및 수강신청 등이 발생하는 정규학위과정 및 교환과정의 외국인 학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 실습 시작일은 반드시 해당학기 시작일에 시작되어야 하나요?

- 실습기간은 학교별로 정한 학기 기간내에 실습기관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면 되며, 필수 출석(출근) 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학점인정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기 : 1개월(4주)-20일, 2개월(8주)-40일 이상 / 장기 : 3개월(12주)-60일, 4개월(16주)-80일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현장실습생을 산재적용 시 근로자로 의제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 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인 사업자장의 경우도 사업자 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학교의 상해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학기제로의 학점인정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510-1000, 3704

intern@pusan.ac.kr

<https://placement.pusan.ac.kr>

---